

#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헴프(삼베) 제품의 전시판매 및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헴프 산업육성과 관광객 유입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을 설치하고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시체험실의 용도와 설치시설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나. 전시체험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(안 제4조)
- 다. 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함 (안 제5조)
- 라. 관리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의무를 규정함 (안 제6조,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 (개정조례안)

(2) 입법예고('13. 8. 20. ~ 9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(이하 "전시체험실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전시체험실은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49-1번지(방림면 고원로 1247) 일원에 둔다.

제3조(시설운영) ①전시체험실은 헴프(삼베)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,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②전시체험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한다.

1. 헴프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
2. 헴프 제품의 생산 및 체험시설
3.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

제4조(관리위탁) ①군수는 전시체험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6조, 제7조, 제10조를 준용한다.

③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료 등) ①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사용료의 요율은 험프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년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.

②사용료의 산출기준, 납기, 납부방법 등은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관리수탁자의 의무) ①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관리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③계약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명도하여야 한다.

④관리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다만,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·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험증서의 제출) ①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관리 중에 발생

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위탁계약 즉시 가입하고 군수에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·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.

제8조(예산의 지원) 전시체험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보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의 취소)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관리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
2. 제10조에 따른 조사·검사 결과 관리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,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사무의민간

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권고적 형식이며 미래의 수요예상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 제외 대상임

## 4. 작성자

작성자	경제체육과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 -2540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~② (생략)**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**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2.4>

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2.4>

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>

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>

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2.4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

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**제14조(사용료)**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③~⑦ (생략)

**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**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<개정 2013.6.21>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 <신설 2013.6.21>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

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3.6.21> [전문개정 2009.4.24]

**제21조(수탁재산의 이용료 등)**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·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0.8.4, 2013.6.21>

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4, 2013.6.21>

③ 제2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21>

#### 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

**제22조(행정·보존재산의 위탁관리)**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 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,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

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~⑥ 생략

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**제6조(수탁기관 선정)**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**제7조(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**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"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"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협약체결등)**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